

## < 수시 공시 >

2012.11.26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	50 억 미만 시작일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7호(채권혼합)	2,215,174,838	2,213,465,573	999.23	2011.12.26.
2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2,552,346,138	2,592,972,597	1015.92	2011.12.26.
3	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1,104,543,271	1,131,735,942	1024.62	2011.04.26.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2.11.25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